

지금이 북한의 황폐산림복구에 관심을 가질때

김의정 / 임업연구원 農博

북한은 지난 30년간 식량증산을 위해 소위 다락밭을 조성하고 연료채취를 위해 대면적의 산림을 훼손하여 왔으며 이들 훼손지는 급한 경사지에 초지형태로 방치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산림훼손지는 큰비가 오면 흘러내리는 토사량이 녹화된 산림보다 100배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의 북한식량위기를 야기한 수해가 바로 산림훼손지가 늘어남에 따라 집중호우때 막대한 토사가 농경지로 흘러내려 일어났다는 것이다. 북한의 울농사도 낙관만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북한의 식량위기를 구조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하려면 농업기술과 영농시설기반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북한의 훼손된 산림의 복구사업도 대단히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상황으로 보아 황폐산림의 복구사업을 가까운 시일내에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며 이에 대한 북한당국의 관심과 의지도 의문시된다. 북한 당국은 대만의 핵폐기물을 수입하려하고 있고, 금수산공전의 성역화 사업에 북한 GNP의 5%에 해당하는 비용을 썼다는 보도가 있었다. 국민안

전과 국토보전을 위한 환경의식과 국가 예산배분의 합리성이론 잣대로 보면 북한당국에 담당함을 금할 수 없다. 이러한 사례들을 미루어 보아 대규모의 산림복구사업을 북한당국 스스로 추진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견된다.

훼손산림복구사업은 토사가 흘러내리고 있는 황폐지는 사방사업을 하고 나무가 없는 민둥산은 조림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들 복구사업은 경사가 급한 북한지역의 산림에서는 기계화가 어려워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된다. 남한은 해방후 대면적의 황폐된 민둥산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성공적으로 사방녹화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와 국민이 강한 녹화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특히 당시 농촌지역의 풍부한 인력을 저렴한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의 산림복구사업도 인력이 풍부하고 인건비가 싼 지금 추진하지 못하고 통일후로 미룬다면 복구비용은 엄청나게 늘어나 막대한 추가 통일비용의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이 된다면 북한주민이 남한으로 급격히 유출되고 북한내의 각종 제

산림법 시행령 개정

조업과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에 인력이 우선 투입되면서 산림 복구사업에 투입될 북한지역농촌 인력이 부족하게 되고 인건비 또한 급격한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식량자원을 북한의 식량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되어 가면서 남북경제협력협상 여건이 성숙되어 가고 있다. 세계에서 북한의 산림황폐를 걱정해 주고 복구사업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나라는 남한 밖에 없다. 산림복구사업은 돈 만 가

지고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임업기술자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협조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북한 주민과 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산림복구사업이야말로 달려진 우리동포간 서로의 가슴을 가장 자연스럽게 열 수 있는 민족화합의 경제협력사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남북경제협력을 논의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보다 북한의 산림복구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문화일보 1997. 7. 19〉

산림법 시행령 산림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은 산림법 시행령과 동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관보 제13646호(1997. 6. 30), 산림청공고 제1977-7호(산림법 시행령 개정안), 산림청공고 제1977-8호(동 시행규칙)로 입법예고 하였다.

동 입법예고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본회는 별항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관보 제13646호 1997. 6. 30자〉

◎산림청공고 제1977-7

산림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법제업무운영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7년 6월 30일

산 립 청 장

산림법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목상 임야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산림이 아닌 경우 산림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산림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대체조립비 50% 감면대상에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을 신설하는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무분별하고 산발적인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석단지 지정면적을 20ha 이상에서 10ha이상으로 축소하고, 채석단지 지정시 채석타당성평가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